



보도시점 2024. 5. 29.(수) 11:00
< 5.30.(목) 조간 >

배포 2024. 5. 29.(수)

수출지원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인증 체제 본격화

-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 참여기업 현장 방문 및 2차 시범사업 착수

유럽연합(EU)·미국 등 주요국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*에 따라, 우리 기업들은 수출 시 해외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을 받아야 하고,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. 해외와 상호인정되는 한국형 인증제도가 시급한 이유이다.

* EU : (포장) '30년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비율 30% 목표 / (배터리) '31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
미국 : (캘리포니아주) '22년부터 플라스틱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(15% 이상) 의무화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전자제품(냉장고, TV, 사운드바, 슈케어) 및 전기차 배터리(원료) 등 5개 제품군(6개 기업)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*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하였다.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원료부터 소재, 부품 및 최종재에 이르는 제품 공급망의 전(全) 과정을 추적하여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하는 제도이다.

* 삼성전자, LG전자, 성일하이텍 등 수요기업과 다수의 공급기업이 협업하여 사업 추진

산업부는 1차 시범사업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증 체계안을 개발하였다. 2차 시범사업은 개발된 인증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, 금년 6월 섬유(의류·소재), 배터리(공급망),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. 참여 희망기업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(ce@kncpc.re.kr)로 신청할 수 있다.

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5월 29일(수)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재생 플라스틱 생산 기업인 씨엔텍코리아*를 방문하여,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시범인증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* 씨엔텍코리아는 삼성전자(냉장고)에 재생 플라스틱 소재를 공급

이승렬 실장은 “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인증제도와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품 수출 시 과도한 해외 인증 비용 등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” 면서, “향후 친환경산업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, 본 제도가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와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 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	책임자	과 장	이상은 (044-203-4240)
		담당자	사무관	이상필 (044-203-4246)

1. 현장방문 개요

- (일시·장소) '24. 5. 29.(수) 15:00 ~ 16:30, 씨엔텍코리아*(경기 화성 소재)
 - * 삼성전자(냉장고)에 재생 플라스틱 소재를 납품 (삼성전자와 컨소시엄으로 시범사업 참여)
- (참석자) 산업정책실장, 산업환경과, 한국생산기술연구원(국가청정 생산지원센터), 시범사업 기업* 관계자 등
 - * (완제품) 삼성전자, LG전자, 성일하이텍 / (공급망) 씨엔텍코리아, 삼성레진, LG화학
- (내용) 재생원료 인증제 1차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시범인증서 수여, 기업 간담회 및 사업장 생산공정 확인 등

2. 세부 일정(안)

시 간 (90')		주요 내용	비 고
15:00~15:03	3'	▶ 모두발언	산업정책실장
15:03~15:08	5'	▶ 재생원료인증제 1차 시범사업 결과 공유	산업환경과
15:08~15:18	10'	▶ 시범인증서 수여식	산업정책실장
15:18~15:20	2'	▶ 참석자 사진촬영	참석자 전원
15:20~15:50	30'	▶ 참여기업 간담회	"
15:50~15:55	5'	이동 (회의장⇒사업장)	
15:55~16:25	30'	▶ 재생원료 생산공정 현장확인	-
16:25~16:30	5'	▶ 정리	-

참고2

재생원료 인증제도 개요

1. 추진 배경

- 재생자원 수요 증가 및 해외 바이어로부터의 공급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여부, 함량에 대한 고가의 해외검증 요구 증가
-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의존도를 낮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생원료인증제도 추진의 법적근거* 마련 및 정책**에 반영

* 친환경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호 재생자원의 품질제고를 위한 기반구축

** 「규제개선 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」(‘22.9), 「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」(‘23.6)

2. 제도 개요

- 재생원료가 포함된 제품(소재·부품)의 공급망 전과정에서 문서·현장 심사를 통해 재생원료 사용여부와 함유율을 검·인증하는 제도
 - 폐기단계의 원료 수집부터 재생원료 생산, 최종제품 생산단계까지 재생원료의 투입·산출량, 함량비율 등의 정보를 제3자가 입증
- * 공급망의 원료 흐름을 발생원에서 제품 적용단계까지 추적하는 관리연속성을 통해 확인

< 참고 : 재생원료인증제도 구성 >

